

춘천지방법원 2023. 4. 19 선고 2022가단1483 판결 [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가등기의 말소]

전 문

원고(선정당사자) A

피 고 B 주식회사

특별대리인 C

변 론 종 결 2023. 4. 5.

판 결 선 고 2023. 4. 19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(선정당사자) 및 선정자 D, E, F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/2 지분(G 소유지분)에 관하여 각 춘천지방법원 1965. 9. 1. 접수 제11870호로 마친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.
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

갑 제1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, 원고(선정당사자) 및 선정자들은 2021. 11. 2.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(이하 '이 사건 부동산'이라고 한다) 중 G의 1/2 지분을 해당 상속지분(각 2/16)에 따라 상속받고, 2022. 5. 18. 지분이전등기를 각 마친 사실, 피고는 1965. 9. 1. 위와 같은 G의 1/2 지분에 관하여 1965. 7. 29.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가등기(이하 '이 사건 가등기'라고 한다)를 마친 사실, 피고가 매매예약일로부터 10년이 지난 현재까지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여 제척기간 도과로 위 매매예약완결권이 소멸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.

따라서 피고는 원고(선정당사자) 및 선정자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1/2 지분에 관하여 마친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.

2. 결 론

그렇다면, 원고(선정당사자)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.

판사 안석

별지